



제 309 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 1 차 도 시 교 통 위 원 회

---

남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5. 2. .

**도 시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 남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 1. 제안경과

본 조례안은 2025년 1월 24일 이상기 의원 등 14명의 발의로 제출되어 동일자로 도시교통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 2. 제안이유

시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며 사회 발전적 기여와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자 매진하는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정주여건을 마련하여 역동적인 농어촌의 재생과 함께 안정된 농어업 경영이 영위되도록 이바지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4조)

다. 농어민 기회소득의 지급대상,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제7조)

라. 농어민 기회소득 위원회 설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 제14조)

마. 보조금 지급 중지, 환수 및 보조금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15조 ~ 제16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1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다. 관련부서 : 농생명정책과

라. 입법예고 : 2025. 1. 24. ~ 2025. 1. 31. (7일간)

마. 예고결과 : 의견없음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기존의 농민기본소득 조례와의 주요 차이점으로 먼저, 지원 대상을 50세 미만의 농어민, 귀농어업인, 친환경 인증 받은 농어민 등으로 확대하고, 관내 주민등록 1년 거주 요건을 삭제했으며, 매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등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기회소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부칙에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폐지하는 등 조례의 형식과 내용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농어민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농어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산업”이란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
  - 가. 어업: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

### □ 「귀농어·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귀농어업인”이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유기식품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12. 2.>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유기식품등의 인증대상과 유기식품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8. 27., 2020. 3. 24.>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기 위한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대상과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9. 8. 27., 2020. 3. 24.>

③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을 생산, 제조

· 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는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이 장에서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을 받은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을 다시 포장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저장, 운송 또는 판매하는 자는 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제한, 심사 및 재심사, 인증 변경승인, 인증의 유효기간, 인증의 갱신 및 유효기간의 연장, 인증사업자의 준수사항, 인증의 취소,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및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하여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4조 및 제2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본다. <개정 2019. 8. 27., 2020. 3. 24.>

⑤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 등에 관한 부정행위의 금지, 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인증기관의 사후관리,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지위 승계 등에 관하여는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등”은 “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또는 무항생제수산물등”으로,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은 “제한적으로 무농약표시를 허용한 식품”으로 본다.

## □ 「동물보호법」

제5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 증진

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하 “농장동물”이라 한다)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제6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하여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동물복지축산농장(이하 “인증농장”이라 한다)의 경영자는 그 인증을 유지하려면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 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인증 또는 제5항에 따른 인증갱신에 대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 및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인증농장의 인증 절차 및 인증의 갱신, 재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가축행복농장 인증) ① 도지사는 가축행복축산 증진에 이바지하고 가축이 사육기간에 기본적 생리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어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관리하는 농장을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가축행복농장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시장·군수는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가축행복농장 인증 신청 장소에 대한 실제 조사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자문기구 심의를 거쳐 경기도 가축행복농장으로 인증한다.

④ 가축행복농장 인증기간은 최초 인증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사후 점검 결과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년 인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경기도 명품수산물 인증 및 관리 조례」

제4조(명품수산물의 인증) ① 도지사는 경기도 소재 양식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양식하여 생산한 수산물에 대해 명품수산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명품수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양식장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신청서류를 검토 후 이상이 없을 경우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인증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한다.

④ 경기도 명품수산물의 인증 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기간, 인증 절차,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비용추계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남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 제4조. 제5조1항, 제7조, 제8조, 제12조4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 읍면동 현장신청 보조 인력 인건비
- 위원회 운영

※ 농민기본소득지원사업 조례에 있는 항목으로, 추가 비용 요소는 아니지만 비용 발생 요인임

###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농민기본소득→농어민기회소득으로 변경·확대
- 농어민 개인에게 매월 5 ~ 1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
- 지급 대상 : 일반농어민 5,284명, 청년·귀·환경 농어민 1,092명
- 2025년 예산안 : 3,859,800천원

(도비 : 3,751,400천원, 시비 : 108,400천원)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총 소요액		5,352	5,352	5,352	5,352	5,352	5,352
농어민 기회소득	수혜금	5,136	5,136	5,136	5,136	5,136	5,136
	부대운영비	216	216	216	216	216	216

○ 2025년 총 소요 예상액 : 5,352,800천원

(도비 2,676,400천원, 시비 2,676,400천원)

- 수혜금(일반 농어민) 5,284명×월 5만원×12개월 : 3,170,400천원
- 수혜금(청년·귀·환경 농어민) 1,092명×월 15만원×12개월 : 1,965,600천원
- 부대운영비 : 216,800천원
- 인건비(읍면동 현장신청 보조 기간제) 12명×월 270만원×5개월 : 162,000천원
- 위원회 운영비(위원회 수당 및 행정경비) : 54,8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일반회계로 편성**

○ 도 보조금 50%, 자체수입 50%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해당없음**

**4. 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제2-2쪽)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계	
<b>세 출</b>	5,352,800	5,352,800	5,352,800	5,352,800	5,352,800	5,352,800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5,136,000	5,136,000	5,136,000	5,136,000	5,136,000	5,136,000	
부대운영비	216,800	216,800	216,800	216,800	216,800	216,800	
<b>재원 조달</b>	5,352,800	5,352,800	5,352,800	5,352,800	5,352,800	26,764,000	
의존 재원	소 계	2,676,400	2,676,400	2,676,400	2,676,400	2,676,400	13,382,000
	보조금	2,676,400	2,676,400	2,676,400	2,676,400	2,676,400	13,382,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2,676,400	2,676,400	2,676,400	2,676,400	2,676,400	13,382,000
	지방세	2,676,400	2,676,400	2,676,400	2,676,400	2,676,400	13,382,000
	세외수입						